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시 국적에 따른 차별 금지〉
■ 이용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459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내용	2
2. 외국국적동포 현황 및 체류자격	3
3. 개정안 검토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이용선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2025. 1. 13.
3. 회 부 일: 2025. 1.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 제5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그런데 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출신 국적에 따라 서로 다른 요건을 적용하고 있고, 그 결과 국적에 따라 외국국적동포가 취득하고 있는 체류자격이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국적의 다름을 기준으로 재외동포를 차별하는 조치이며, 「재외동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가는 거주국을 기준으로 재외동포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과도 부합하지 아니함.

이에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신청자의 국적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5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개정안은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자격 부여 시 법무부장관이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 ③ (생략) <u><신설></u> ④ (생략)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의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가.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다.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2.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한 자의 활동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외국국적동포 현황 및 체류자격

현행법상 재외동포는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른바 “재외국민”과, ②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²⁾으로 정하는 이른바 “외국국적동포”를 의미함.

재외동포로서 체류자격을 가지는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에서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이 자유롭게 허용되고,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출입국이나 재입국에 있어서 체류기간에 혜택이 부여되며, 부동산거래 및 금융거래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짐.

또한, 현행법은 “외국국적동포”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부여하고 있음.³⁾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체류자격은 4가지 종류임. ① 첫째, 대한민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60세 미만 동포에게 발급하는 “단기방문(C-3-8)”, ② 둘째, 중국 및 구소련지역(CIS)⁴⁾의 18세 이상 동포에게 발급하는 “방문취업(H-2)”, ③ 셋째, 과거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동포(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국외 이주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재외동포(F-4)”, ④ 넷째, 방문취업(H-2) 또는 재외동포(F-4) 자격에서 근무·소득·체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거나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동포에게 발급하는 “동포영주(F-5)”가 그것임.

제10조(출입국과 체류)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은 최장 3년까지로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④ 대한민국 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移轉申告)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

제11조(부동산거래 등) 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할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금융거래)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자본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외국환거래) 재외국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거나 외국에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제17조를 적용할 때 재외국민은 외국국적동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1. 외국에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수용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그 매각 또는 처분대금
2.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輸入)하거나 국내에 지급한 지급수단

제14조(건강보험)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16조(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4) 구소련지역(CIS) 6개 국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체류자격 종류 개요 】

체류자격	단기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
발급대상	60세미만 동포	중국 및 구소련지역(CIS)의 18세 이상 동포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동포 (정부 수립 전 국외 이주 동포 포함) 또는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 취득한 동포	방문취업(H-2) 또는 재외동포(F-4) 자격에서 일정요건 충족 또는 국적취득조건 충족한 동포
주요내용	유효기간 5년내 자유롭게 출입국 가능, 1회 최대 90일 체류, 취업전면제한	최대 3년 체류가능, 일정요건 충족 시 연장 가능(최대 1년 10개월), 취업가능(범위 제한)	최대 3년 체류가능, 제한사유 미발생 시 계속 연장 가능, 취업가능(단순노무직 등 일부 제외)	체류기간 상한 없음, 취업활동 제한 없음

※ 법무부 자료 재구성

이들 체류자격 중에서 ②“방문취업(H-2)”과 ③“재외동포(F-4)”의 주요내용을 살펴봄. 우선, ②“방문취업(H-2)”은 단기방문(C-3-8)과 달리 최대 3년간 대한민국에서 장기체류하려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의 18세 이상 동포에게 발급되는 것이고, 취업 목적⁵⁾인 경우 최대 1년 10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4년 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으나, 취업 활동범위는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일부 서비스업에 한정됨.

반면, ③“재외동포(F-4)”는 3년 단위로 체류가 가능하고, 법 위반이나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 등의 제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단순노무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이 아닌 한 보다 높은 기술적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무 분야까지 비교적 자유롭게 취업 활동이 가능함.

5) 취업 외 목적의 경우는 1년씩 연장 가능하나, 동 목적으로 연장 후 취업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중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자격 비교 및 통계】

구 분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대 상	중국·구소련 6개국* 동포(18세 이상)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외국국적동포 (단, 고시국가 ⁶⁾ 로 지정된 불법체류 다발국가 동포는 학력·소득 등 추가요건 입증 필요)
체류기간	최장 4년 10개월	제한 없음(3년씩 연장)
활동범위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결정한 허용 업종 ※ 인력부족,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여 선정	경제활동 자유 (단, 단순노무 등 일부 직종 제외)
현황 (‘25. 1. 기준)	약 9.3만 명(쿼터 : 25만 명) ⁷⁾	약 55.7만 명(쿼터제한 없음)

(단위 : 명, ‘25.1.기준)

국적별 「재외동포(F-4)」 자격 체류자 현황						
총 계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
557,935	51,227	17,695	5,557	2,686	865	392,791
	러시아	우즈벡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즈스탄	기타
	33,451	28,954	14,566	2,304	2,822	5,017

국적별 「방문취업(H-2)」 자격 체류자 현황					
총 계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즈
93,267	79,916	7,598	4,582	440	649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	*’11. 11. 1.부터 러시아는 방문취업(H-2) 대상 국가에서 제외되었으나 불법체류 중인 7명 통계에 포함되어 산출	
	69	6	7		

※자료: 법무부

- 6) 불법체류 다발 고시국가 관련 세부사항은 7p.이하 참조
- 7) 보다 자세하게는, 연고가 있는 동포는 자유롭게 입국(연고인 1인당 초청인원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연고 동포에 대해서는 대량 입국에 따른 노동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허용인원(쿼터: ’22년 25만명)을 정하여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무연고 동포의 ①연간 허용인원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가, ②국적별 세부할당은 법무부장관이 결정

3. 개정안 검토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발급 시 외국국적동포는 국적과 무관하게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통으로 제출하고 있음. 다만, 이에 더하여 법무부는 2011년 불법체류 다발 21개 국가를 별도로 지정·고시하고, 체류자격 부여 시 해당 국가 동포에게는 학력·소득 등 추가서류를 제출·입증하도록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동포의 국적이 고시국가인지 비고시 국가인지에 따라 차등 대우하고 있음.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법무부고시 제2011-534호)】

- ▶ 개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5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첨부서류 부분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 대한 고시 규정임
- ▶ 대상국가(총 21개국) :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 ▶ 시행일 : 2011.11.1.
- ▶ 고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는 하기 요건(A)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CIS) 18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음.

【 비고시국가와 고시국가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일부) 】

자격 코드명		대 상(요 건)
비 고 시 국 가	F-4-11	①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F-4-12	②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자격 코드명		대 상(요 건)
고 시 국 가 (A)	F-4-13	① 문화예술(D-1) 및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
	F-4-14	②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졸업자)이상 학위소지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F-4-15	③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F-4-16	④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 임원 및 관리직 직원
	F-4-17	⑤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 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 대표)
	...	⑥ ~⑩ (이하 생략)

이에 개정안은 체류자격 부여에 있어서 국적별로 차이가 존재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무부장관이 동포체류자격 부여 시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게 명시함으로써, 외국국적동포에게 취업활동의 자유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국내 정착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 및 시행계획, 「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2024.9.)」에는 중국·고려인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확대 및 동포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일원화함과 동시에, 기존에 불허한 비전문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동포의 체류자격 단계적 통합”을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⁸⁾

【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자격 사항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 및 2025년 시행계획
▶ (과제명)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 (실천과제) 3-4. 국민과 동포의 유대에 기반한 동반성장 ▶ (세부과제명) 3-4-1-1 동포의 체류자격 단계적 통합

8)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는) 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 10p., 법무부(2024. 9. 26.)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확대 및 방문취업(H-2)와 재외동포(F-4)의 단계적 통합

※자료: 법무부

【 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2024.9.) 중 중점 추진과제별 개선사항 】

③ 이민자 통합 강화	기존	개선
동포 차별 해소 및 체류 지원	동포(F-4) 비자 신청 요건이 국적별로 달라 차별 논란 야기	국적에 따른 차별 해소를 위해 비자를 통합하고, 취업 가능 범위 확대

※법무부 자료 재구성

또한, 법무부가 불법체류 다발 국가를 고시하고 해당 국가 동포에게 체류자격 부여 시 추가요건 입증 제도를 도입한 것은 불법체류 해소 등 정책적 상황에 대응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국적과 관계없이 동포 체류자격을 동등하게 부여함에 따른 출입국 관리 영향요인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임.

한편, 개정안 부칙과 관련하여, 국적과 무관하게 동등한 체류자격을 부여할 경우, 대상인 21개국 모두가 동시에 전환 가능한지 여부, 신청·심사·발급·입국 순서로 진행되는 사증 발급 절차 단계를 감안할 때 개정안 적용 범위 등 개정안 적용대상 국가의 동시전환 여부, 발급 단계 특정 등 법 적용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57